

나. 세입예산(일반 + 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2회 추경안)	구성비	기정액 (1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62,377,306	100.00	441,477,935	20,899,371	4.73
지방세수입	47,551,250	10.28	47,551,250	0	0.00
세외수입	23,587,005	5.10	23,961,132	△374,127	△1.56
지방교부세	25,916,839	5.61	21,535,576	4,381,263	20.34
조정교부금등	67,341,500	14.56	65,397,500	1,944,000	2.97
보조금	268,346,781	58.04	253,544,559	14,802,222	5.84
국고보조금 등	178,135,539	38.53	168,838,155	9,297,384	5.51
시·도비보조금 등	90,211,242	19.51	84,706,404	5,504,838	6.5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9,633,931	6.41	29,487,918	146,013	0.50
보전수입 등	28,178,310	6.09	28,164,176	14,134	0.05
내부거래	1,455,621	0.31	1,323,742	131,879	9.96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462,377,306천원으로 기정액(1회추경) 세입 441,477,935천원보다 20,899,37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73% 증액편성 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을 포함하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의 증가율은 0.50%로 나타났음.

- ▶ 순세계잉여금 : 17,990,415천원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
- ▶ 전년도이월금 : 10,187,895천원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
- ▶ 전입금 : 1,455,621천원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

다. 세출예산(일반 + 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분 (기능별)	예산액 (2회 추경안)	구성비	기정액 (1회 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62,377,306	100.00	441,477,935	20,899,371	4.73
일반공공행정	16,006,724	3.46	15,819,180	187,544	1.19
공공질서 및 안전	6,133,984	1.33	6,081,910	52,074	0.86
교육	3,027,759	0.65	3,081,251	△53,492	△1.74
문화 및 관광	25,752,714	5.57	24,500,052	1,252,662	5.11
환경	16,459,449	3.56	16,321,169	138,280	0.85
사회복지	261,521,728	56.56	246,345,091	15,176,637	6.16
보건	13,632,549	2.95	11,719,246	1,913,303	16.33
농림해양수산	9,809,605	2.12	7,367,919	2,441,686	33.14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352,923	0.94	4,018,099	334,824	8.33
교통 및 물류	21,114,303	4.57	20,287,786	826,517	4.07
국토 및 지역개발	20,725,238	4.48	20,762,208	△36,970	△0.18
예비비	4,391,706	0.95	5,691,529	△1,299,823	△22.84
기타	59,448,624	12.86	59,482,495	△33,871	△0.06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은 기정액(1회추경) 441,477,935천원 보다 20,899,371천원이 증액된 462,377,30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33.1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보건 예산 16.33% 순이며,

○ 기정액(1회추경) 대비 추가경정예산 증가율은 임업·산촌 47.77%, 취약계층지원 31.55%, 보건의료 17.38%, 문화예술 15.20% 순으로 증액되었음.

라. 주요 신규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경제진흥과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및 홍보물 제작	16,200			16,200	142
행정지원과	비대면 민원서비스공모사업(성립전)	12,000			12,000 (특)	158
문화관광과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참가	10,000			10,000	180
	함월루 방충방부제 도포 및 목재 수지 처리공사	22,000			22,000	180
혁신교육과	성인 발달장애인 기초문해교재 제작	15,400			15,400	192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성립전)	440,000			440,000 (금)	193
	실내체육관 기본계획등 용역비	60,000			60,000	194
	중구야구장 조성	300,000			300,000	195
안전총괄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17,500			17,500	282
건설과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성립전)	500,000			500,000 (금)	293
공원녹지과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00,000			100,000 (금)	335
	함월산 등산로 보행매트 설치	100,000			100,000	336
건강관리과	코로나 방역인부임 휴일수당	9,533			9,533	365
문화의당	문화센터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12,500			12,500	388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	20,000			20,000	388

마. 주요 증액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2회추경	기정액	증액	구비	
경제진흥과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	200,000	180,000	20,000	증 20,000	141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90,000	80,000	10,000	증 10,000	141
	농업기반시설(양수장, 저수지, 농로 등)유지보수	130,000	110,000	20,000	증 20,000	143
혁신교육과	체육시설 수리 보수보강	250,000	150,000	100,000	증100,000	194
	중구수영장 운영 공단전출금 간접관리비	337,008	326,008	11,000	증 11,000	195
복지지원과	전몰.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	211,200	199,200	12,000	증 12,000	215
	전상.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390,000	360,000	30,000	증 30,000	215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130,000	100,000	30,000	증 30,000	229
환경미화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44,502	204,000	40,502	증 40,502	265
	청소차량운전원 시간외근 무수당	75,657	65,055	10,602	증 10,602	266
건설과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포대아사콘 등) 자재구입	120,000	100,000	20,000	증 20,000	294
	하수도 준설공사	175,000	100,000	75,000	증 75,000	295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 (자체재원)	600,000	400,000	200,000	증200,000	326
공원녹지과	캠핑장운영 카라반 침구 세탁비	30,600	18,000	12,600	증12,600	337
	입화산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	3,000,000 특1,200,000 금 450,000 구1,350,000	700,000 구 700,000	2,300,000	2,300,000 특1,200,000 금 450,000 구 650,000	337
건강관리과	코로나19 검사용배지 구입	75,000	25,000	50,000	증50,000	365

바. 주요 보조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일자리 기업과	희망근로지원사업(2차)	1,067,307	960,576	53,365	53,366	131
경 제 진 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웰컴시티 엘리베이터교체)	260,700		195,525	65,175	142
혁 신 교 육과	중부도서관 건립	7,700,500	(균)3,333,000	1,667,000	2,700,500	193
복 지 지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구비부담금)	2,198,100			2,198,100	215
	긴급복지 지원사업	2,431,657	1,945,325	243,166	243,166	216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22,962	3,161,481	2,105,546	1,055,935	216
	한시생계지원	1,650,000	1,650,000			217
노 인 장 애인과	공공실버주택 건립	2,886,225	(가)1,486,225		1,400,000	2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0,514,230	5,257,115	5,257,115		227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830,172	6,000	3,657,839	166,333	229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1,100,400	1,100,400			231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건립	2,764,775	2,416,965	222,068	125,742	231
여 성 가 족과	3-5세 보육료	8,940,030		8,940,030		243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43,964	143,964			244
안 전 총 괄과	방범용 CCTV 설치 (마을교부세)	101,600	(금)35,600	66,000		283
건설과	약사천 보행환경개선사업 (성립전)	67,000		67,000		295
공 원 녹 지과	아름다운 동행길 조성사업 (성립전)	84,000	(금)84,000			335
	약사제당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성립전)	35,000		35,000		335
건 강 관 리과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지원	400,000	400,000			366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350,000	350,000			368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046,435	1,046,435			370

사.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구비	
노인 장애인과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392,903	238,818	59,705	94,380	411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166,600		166,600		423

아.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분, 한시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지원 사업,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비,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체사업 입화산 키즈레포츠체험존 조성, 학생동일원 도로개설, 중구야구장 조성 추가 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편성 되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과다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천원)

위원회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삭감액
합계	462,377,306	441,477,935	20,899,371	82,313
의회운영위원회	2,067,570	2,058,873	8,697	0
일반회계	2,067,570	2,058,873	8,697	0
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	125,411,127	122,088,895	3,322,232	0
일반회계	125,411,127	122,088,895	3,322,232	0
특별회계				
복지건설위원회	334,898,609	317,330,167	17,568,442	82,313
일반회계	320,705,248	303,366,836	17,338,412	82,313
특별회계	14,193,361	13,963,331	230,030	0

※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 : 별첨

5. 종합보고

가. 경과보고

-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24일중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음.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음.

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보고

-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 ▶ 일반회계 448,183,945천원
 - ▶ 특별회계 14,193,361천원으로
 - ▶ 총 계 462,377,306천원임
 - ▶ 1회추경 (기정액) 441,477,935천원의 4.73%인 20,899,37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결과,
 - ▶ 세입분야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어 삭감된 예산액이 없으며,
 - ▶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82,313천원 삭감되어 추경편성요구액의 0.02%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음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음.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복지환경국 3,000천원 삭감 하였으며,

안전도시국 79,313천원 삭감 하였음.

○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삭감)조서」 참고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 8.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18.10.1.] [의회규칙 제37호, 2018.10.1., 일부개정]

제71조(제안설명과 회부·부의) 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본예산안은 “구정연설”로 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의 세부적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의 위원회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 등에 따른다.

1.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호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한다.
 3.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이유 없이 제2호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 제출 원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심각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동의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동의여부를 예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종료 때까지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의장이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예산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실수 등의 사유로 편성·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을 접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번안을 위하여 이를 접수·회부할 수 있다.
4.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는 처음 회부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